

방송통신사무소 공고 제2021-23호

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 6월 3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6. 3. ~ 2021. 6. 17.(15일)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원)	체납자 주소
1	김*자	1967.08.15.	0178200274100004660	18,000,000	경남 밀양시 복성로 1 길
2	조*민	1964.09.09.	0178200274100004659	18,000,000	대구 동구 율하동로 24 길
3	김*영	1981.03.27.	0178200274100004658	18,000,000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76 번길
4	박*호	1965.07.30.	0178200274100004657	18,000,000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천로 138 번길
5	이*재	1966.10.13.	0178200274100004656	18,000,000	부산 금정구 서동로 176 번길
6	윤*근	1967.04.03.	0178200274100004655	30,000,000	부산 서구 구덕로
7	전*숙	1964.09.01.	0178200274100004654	10,800,000	경남 양산시 양주 5 길
8	네일클로버 조*성	609-18-35***	0178200274100004653	4,410,000	경남 창원시 성산구 동산로
9	윤*호	1983.02.03.	0178200274100004652	4,720,000	서울 양천구 중앙로 39 길
10	박*섭	1966.08.09.	0178200274100004636	2,450,000	경북 안동시 제봉 3 길
11	이*봉	1971.09.20.	0178200274100004634	24,000,000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12	송*권	1961.12.05.	0178200274100004633	18,000,000	부산 동래구 아시야드대로 171 번길
13	정*주	1985.12.02.	0178200274100004632	18,000,000	경남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원)	체납자 주소
14	고*덕	1968.02.18.	0178200274100000430	18,000,000	경남 창원시 의창구 퇴촌로 9 번길
15	최*호	1972.01.16.	0178200274100000429	2,450,000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남 1 길
16	김*진	1981.02.28.	0178200274100000428	18,000,000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남 5 길
17	고*관	1978.02.07.	0178200274100000427	36,000,000	부산 수영구 구락로 10 번길
18	문*주	1975.02.03.	0178200274100000425	18,000,000	부산 중구 망양로 319 번길
19	방*태	1973.03.30.	0178200274100000423	18,000,000	부산 사하구 다대로 530 번길
20	안*호	1964.05.20.	0178200274100000422	18,000,000	부산 남구 석포로 64 번길
21	이*세	1982.05.19.	0178200274100000420	18,000,000	경북 구미시 인동 32 길
22	이*봉	1971.09.20.	0178200274100000418	24,000,000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23	이*용	1975.11.20.	0178200274100000415	9,000,000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929 번길
24	김*호	1962.07.23.	0178200274100000414	27,000,000	부산 사하구 사하로 166 번길
25	이*재	1958.04.08.	0178200274100000413	2,260,000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천로 170 번길
26	최*순	1956.02.20.	0178200274100000412	18,000,000	부산 북구 상리로
27	이*일	1958.09.07.	0178200274100000410	30,000,000	대구 서구 북비산로 58 길
28	이*희	1970.02.10.	0178200274100000409	12,600,000	부산 북구 덕천로
29	홍*	1983.04.05.	0178200274100000408	27,000,000	부산 동구 영초길 232 번길
30	박*호	1973.12.05.	0178200274100000407	22,600,000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09 번길
31	강*영	1965.04.17.	0178200274100000406	12,600,000	제주 서귀포시 효돈순환로
32	손*일	1978.01.16.	0178200274100000403	36,000,000	부산 부산진구 백양대로 300 번길
33	박*철	1981.04.26.	0178200274100000402	16,200,000	부산 부산진구 냉정로 180 번길
34	이*진	1990.03.25.	0178200274100000401	4,090,000	부산 사상구 사상로 500 번길
35	허*영	1961.05.07.	0178200274100000399	54,000,000	경기 수원시 권선구 여기산로 16 번길
36	박*순	1945.02.23.	0178200274100000398	7,560,000	서울 은평구 증산로 15 길
37	갈*현	1976.05.12.	0178200274100000396	18,000,000	경남 통영시 창동 4 길
38	박*일	1967.03.11.	0178200274100000392	18,000,000	부산 부산진구 진사로 68 번길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원)	체납자 주소
39	구*규	1977.10.11.	0178200274100000390	18,000,000	울산 동구 안산로
40	백*석	1974.12.29.	0178200274100000389	18,000,000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양남 21 길
41	김*라	1986.08.01.	0178200274100000387	18,000,000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 15 번길
42	이*남	1943.08.03.	0178200274100000386	27,000,000	부산 중구 동광길
43	김*호	1962.07.23.	0178200274100000059	7,560,000	부산 사하구 사하로 166 번길
44	선물주는사람들 김*진	140-02-06***	0178200274100000054	1,890,000	경남 양산시 물금읍 화합 4 길
45	최*승 (인포텍)	1976.11.04.	0178200274100000052	10,000,000	부산 기장군 정관면 정관로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4, 1207)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식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가산금 및 증가산금 등 안내

-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증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 나. 증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증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권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